

4.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갱신된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 목적	장기요양급여제공의 목적과 방법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영구적인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요양병원 입원, 시설 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시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나뉘며, 그달의 이용료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한다. ※ 본인부담금 비율 : 15%, 9%, 6%, 0%(기초수급자 의료급여포함) ※ 월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용료 변경 절차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어 한도액에 변동이 생겼거나, 매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수가의 변동으로 인해 이용료가 달라질 경우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변경내용에 대해 서명을 받거나 수가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도록 요구할 권리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 4)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5) 수급자에게 업무 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병력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의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센터에 통보할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1.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9%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인자)	6%
기초수급권자	0%